신·구조문 대비표 (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)

현행 (개정 2011.12.08.)	개정(안)	개정이유
(신　설)	제10조의2(전자지급거래의 지연인출)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,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, 인출전 1회 3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송금·이체되어 고객 본인계좌로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10분간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.	지연인출제도 반영을 위한 조항 신설